



주요경과

제10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

- 일시: 2015. 11. 30.(월) 15:00
- 장소: 문체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
- 참석자: 11명(전원 참석)
- 주요내용
 - (보고사항)
 -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정비 → 원안 접수
 - (심의사항)
 - 시도체육회 규정 일부조항(안)
 -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 총회 추대 또는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첫 회장은 시도지사로 함
 -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임원(임기: 4년)
 - 가입탈퇴규정(안)
 - 종목단체 등급은 정회원/준회원/인정
 - 시도종목단체 구성 시 시군구 종목단체 수 및 올림픽 종목 여부 고려
 - 통합체육회 명칭 결정
 - 국문: 대한체육회
 - 영문: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(KSOC)
 - IOC 업무 시: Korean Olympic Committee(KOC)
 - 통합체육회 회장선거 설계(안)
 - 종목단체(지역 종목단체 포함) / 지역 체육단체로 구분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별도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추가 투표권 부여

체육회, 제10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개최

- 일시: 2015. 12. 4.(금) 08:30
- 장소: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
- 참석자: 14명
- 주요내용
 - (보고사항) 통합준비위원회 주요 의결내용 → 원안 접수
 - (심의사항) → 통추위 정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
 - 상임감사제 도입의 문제점 및 대안
 - 체육회 수익금 분배(안) 검토

제11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

- 일시: 2015. 12. 7.(월) 15:00
- 장소: 문체부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
- 참석자: 11명(전원 참석)
- 주요내용
 - (심의사항)
 - 지도자·선수·체육동호인규정(안)
 -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
 - 대한체육회 정관 일부조항(안)
 - 상임감사제 의결
 - 수익금 배분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

향후 일정

제12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

- 일시 및 장소: 2015. 12. 14.(월) 15:00 / 문체부 서울사무소

통합준비위원회 주최 회장선거제도 공청회

- 일시: 2015. 12. 15.(화) 09:30
- 장소: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

제13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(12. 21. 개최 예정)

통합 관련 주요 기사

- (중앙) ▶ “통합체육회 명칭 대한체육회” (12월 2일 조선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체육단체 통합 큰틀 합의…남은 건 퍼즐 맞추기” (12월 3일 한겨레신문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체육단체 통합 관련 대한체육회 헌법소원 추진…동력 상실 지지는 힘들듯” (12월 10일 스포츠서울, [자세히 보기](#))
- (시도) ▶ “순천시, '통합체육회' 내년 3월 출범…전문·생활체육 하나로” (11월 26일 뉴스1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양산 체육회 통합 출범” (11월 26일 부산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충북도, 엘리트·생활체육 통합 '속도'…내년 2월 목표” (11월 29일 뉴시스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충남 시·군 단위 체육단체 통합 속도 높인다” (11월 29일 아주경제, [자세히 보기](#))
 “인천체육회, 단체통합 보고·3건 심의” (12월 2일 기호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부산시체육회-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 이달 발족” (12월 2일 국제신문, [자세히 보기](#))
 “대구시체육회 제6차 이사회 체육단체 통합 승인 심의·의결” (12월 4일 대구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경기도체육회·생활체육회 연말 통합…전국최초” (12월 6일 아시아경제, [자세히 보기](#))
 “대전 체육단체통합 '초읽기’” (12월 6일 중도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경북시군 체육회 직무연수회 단체통합 설명회와 같이 열려” (12월 7일 대구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광주시체육회 경기단체전문이사協, 통합체육회 추진 결의” (12월 8일 광남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포항시 통합체육회 출범준비 이달 중 통합추진위원회 구성” (12월 9일 경북일보, [자세히 보기](#))
 “대전체육회-대전생활체육회, 11일 통합총회 개최” (12월 10일 연합뉴스, [자세히 보기](#))



① 올림픽 마케팅 수익금 분배(안) 논의의 배경

- 통합준비위원회는 경기단체/시도체육회 요구에 따라 통합체육회 정관(안), 회원종목단체규정(안) 및 시도체육회 규정(안)에 체육회의 올림픽 마케팅 수익금에 대한 분배 조항을 신설코자 하고있음
- 제11차 통합준비위원회(15. 12. 7.)에서 수익금 분배 및 별도 협의체 구성 의결
- 수익금 분배 관련 별도 협의체 회의(15. 12. 10.)시 분배비율, 의무조항 등 논의(차기 통준위 회의 시 심의 예정)

※참고: 제4차 통합추진위원회 정관 소위원회(15. 12. 9.) 시 논의 내용

시·도체육회 의견

- 기관 운영성 수입금(무교동 체육회관, 국제스케이트장 등) 외에는 분배 필요

경기단체 의견

- 경기단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, 체육회가 IOC 수익금을 왜 지금까지 분배하지 않았는지 의문

대한체육회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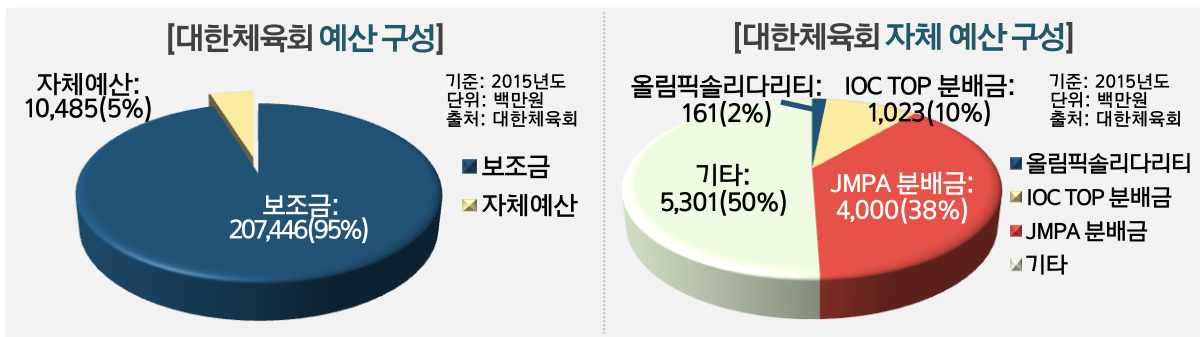
- 올림픽현장 및 정관 상 체육회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 전무
- 체육회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따라 총 수입을 지출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여 기재부 및 문체부 승인 후 지출하므로 IOC 분배금이 체육회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정부는 기관의 자체 수익금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편성하므로, 수익금을 분배할 경우 정부예산 추가확보 필요
- 수익금 분배 시 IOC 계약사항 등 준수 의무를 정관 및 규정에 명시하고, 종목·지역단체는 필히 준수 요망

외부 전문가 의견

- 대한체육회의 수익금을 왜 분배해야 하는지 이해 불가(근거 미약)
-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, KOC 고유사업(올림픽운동 등)으로 별도 회계편성하여 지출하는 방법 제안
- 세부적인 분배 비율 논의 과정 상 타 NOC 사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보이므로 추가 사례분석 필요

② 분배 대상 수익금의 범위

분배 검토 대상 수익금은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 중 마케팅 수익금으로, 마케팅 수익은 크게 IOC의 TOP 분배금과 올림픽 솔리다리티 지원금, 평창조직위의 JMPA 분배금으로 구분된다.



[마케팅 수익금 분류 및 분배 검토 대상 여부]

TOP 분배금	IOC의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TOP(The Olympic Partner)에 따라, NOC가 TOP 후원사에게 NOC 후원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권리를 보장하는 대가로 분배받는 수익금 → 분배 검토 대상
JMPA 분배금	JMPA(공동마케팅협약, Joint Marketing Programme Agreement)에 따라, KOC 및 올림픽 관련 자산을 조직위에 양도하고 자체 마케팅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직위로부터 분배받는 수익금 → 분배 검토 대상
올림픽솔리다리티 지원금	IOC의 올림픽 솔리다리티사업(NOC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한 NOC에 교부에 따라 교부되는 대회참가, 훈련, 행사 개최(참가) 등에 대한 목적성 재정 지원 → 분배 검토 대상 아님

통합준비위원회 및 경기단체·시도체육회 수익금 분배(안)

- 통합준비위원회 안: 제7차 회의(2015. 11. 5.) 기준 통합체육회 정관(안) 中

제2장 제9조(회원단체 및 시·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단체 및 시·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- 6. 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 활동 및 각종종합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 (그 배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)

- 경기단체·시도체육회 안: 제11차 통합준비위원회(2015. 12. 7.) 안건 기준

구분	대한체육회	종목단체	시도종목단체	시도체육회
경기단체 의견	10%	70%(종목단체 30%, 시도종목단체 40%)		20%
시도체육회 의견	10%	20%	70%(시도체육회 10%, 시도종목단체 60%)	

수익금 분배(안) 문제점 분석

◆ 문제점①: 권리에 따른 의무조항 전무

통합체육회 정관(안), 회원종목단체규정(안) 및 시도체육회규정(안)에 종목단체와 시·도체육회가 체육회의 수익금을 받을 권리만 명시. 이에 따른 의무 조항 전무

※ 정회원단체단,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가입한 단체(통합체육회 정관(안) 제7조제2항)

◆ 문제점②: 체육회 사전승인 및 공동마케팅 원칙 미준수

올림픽헌장(제29조) 및 체육회 마케팅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·시도체육회에서 IOC 또는 체육회(KOC)의 권리를 사용할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그 권리를 활용한 일체의 수익은 체육회에도 분배되어야 함. 하지만 현재는 동 원칙에 대한 미준수 만연

◆ 개선안①: 권리와 의무를 규정에 명시

규정상에 종목단체/시·도체육회의 올림픽헌장(제29조) 및 체육회 마케팅 규정 준수 의무, 동 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명시

◆ 개선안②: 사전승인 및 공동마케팅 원칙(의무) 준수

규정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 조항에 따라 종목단체·시도체육회에서 IOC 및 체육회(KOC) 권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고 계약 후, 그 권리를 활용한 일체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체육회에도 분배할 의무 명시

※승인 및 신고 대상(권리사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)

- 올림픽 후원금, 격려금, ITs 지원금, 마케팅 수익, 광고, 입촌 국가대표 관련 초상권 등

※글로벌 및 로컬 스폰서 독점권 보장

- 업종별 독점 구매 보장 및 홍보, 불수용시 올림픽 및 국내종합대회 출전 불가

수익금 분배(안) 개선방안

체육회 수익금 분배(안): 전제조건(의무 준수) 충족 시, 공동마케팅(JMP)을 통한 수익금 상호 분배

- 대상: 분배조건 동의 단체(회원: 경기단체, 시도체육회 등)

- 분배비율

- (1차년도, 2016년) 체육회와 종목단체/시도체육회 간 합의 분배
- (2차년도부터) 체육회 수익금의 90% → 종목단체/시도체육회로 분배

종목단체/시도체육회 당해연도 승인 및 신고대상 수익금 총액의 10% → 체육회로 분배

※분배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는 단체도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시 IOC 및 체육회 제규정 준수 의무가 있음

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